

---

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

#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

---

'20. 12. 23.

관계부처 합동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배경 .....               | 2  |
| II.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.....    | 5  |
| III.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.....   | 6  |
| 1. 예술인 .....                | 6  |
| 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플랫폼 종사자 .....  | 7  |
| 3. 자영업자 .....               | 15 |
| 4.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.....        | 17 |
| 5. 적용제외 .....               | 18 |
| IV.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 .....   | 19 |
| V. 추진체계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.....  | 22 |
| 붙임 : 추진 일정 및 과제별 추진계획 ..... | 26 |

## 고용보험의 성과

###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, 가입률 지속 상승

◆ '95년 도입 이후, 외환위기('98~'99년) 및 금융위기('09~'10년)를 겪으며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 수행

- \* 지원실적: ▲('98~'99년 외환위기) 구직급여 약 85만명, 1.6조원,  
▲('09~'10년 금융위기) 구직급여 약 248만명, 7조원 / 고용유지지원금 약 3천억원

- 적용범위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\* 지속, 고용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개선\*\*

- \* ▲('98년 외환위기) 적용 사업장 확대(30인→1인 이상), ▲('02년 초저출산 진입) 모성보호 도입, ▲('04년 비정규직 확대) 일용근로자 적용, ▲('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작

\*\* 가입률(경찰 부가조사): 52.2%('04)→56.9%('08)→66.4%('12)→69.7%('16)→72.6%('20)

◆ '17년 이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\*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가입 확대 노력 집중 →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추세 견인

- \* ①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(평균임금 대체율 50→60% 상향), ②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(120~270일), ③초단시간근로자 수급요건 완화(이직전 24개월동안 180일이상) 등

<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·가입자 수>

(단위: %, 천명)



<10인이하 사업장 가입률·가입자 수>

(단위: %, 천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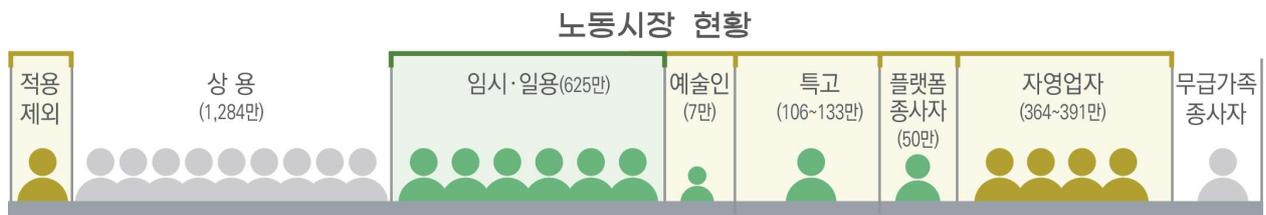
- 코로나 19위기에 대응, 고용유지지원금, 구직급여 및 실업자·휴직자 직업훈련 확대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

- \* 지원실적('20.11월 기준): ▲(고용유지지원금) 근로자 75.5만명 대상 2.1조원 지급, ▲(구직급여) 160만명 대상 10.9조원, ▲(직업훈련) 306만명 대상 2.0조원

# I. 추진 배경

## ①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 급증

-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등장·확산
  -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종속노동과 자영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노동의 자영업화(self-employmentization) 진행 중



👉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

## ② 산업구조 변화로 생애 중 이직·전직 빈번히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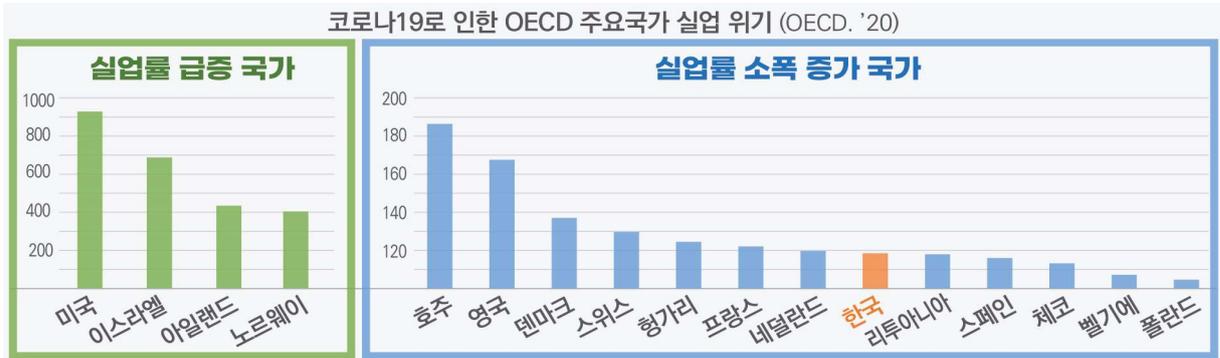
- 제조업 자동화와 함께 서비스·IT·문화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, 노동력의 이동도 증가
  - \* 맥킨지는 '30년 세계 근로자의 14%(3.7억명)~30%(8억명)가 실직·전직할 것으로 예측('18)
  - 특히 서비스업은 플랫폼 노동으로 뒷받침되는 깃(Gig) 이코노미로의 전환이 급진전
-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두 개 이상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,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용형태를 경험
  - \* 국내 취업자 중 10%은 본업과 부업 병행, 향후 부업 계획이 있는 경우 25%(신한은행, '20.4) 대학졸업 후 첫 10년 중 평균 전직 횟수 : 밀레니얼 4회 ↔ X세대(65~80년생) 2회(LinkedIn, '17)
  - 미래의 취업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깃 워커·프리랜서 등 직업 이동이 활발해지고 N잡 시대를 살아갈 확률이 더욱 커질 전망
    - \* 현재 15세는 평균 5개 직업에서 17개의 일자리를 갖게 될 가능성(호주청년재단, '17)

👉 고정된 사업장(사업주)을 넘어, '일하는 사람'을 중심으로 관리되는(portable) 사회보험체계 구축 필요

### 3 코로나19 등으로 전 세계적 일자리 위기 상시화

○ 코로나19 위기로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지난 금융위기('08) 당시 최고치를 크게 상회, 보건 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전이

\* 일자리 위기에 취약한 **취업자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**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상(OECD 2020 고용전망)



○ 특히, 위기 상황에서 고용충격은 **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집중**

\* ('20.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) 전년동월 대비 종사자 수 변화  
 상용근로자 ▲ 0.9%, 임시·일용근로자 ▲ 7.9%, 기타종사자 ▲ 7.5%

- 정부는 특고·프리랜서 등에게 **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\***했으나, 이러한 일회적 지원으로는 근본적 대응에 한계

\* 연 211만명의 특고·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약 2.6조원 지급

👉 **예기치 못한 경제·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마련 필요**

#### <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해외사례>

○ OECD 국가들은 최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**“Dependent contractor”**를 **사회안전망으로 포섭**하기 위한 논의 활발(OECD, '18)

- EU council('19)은 모든 형태의 취업자(근로자, 자영자, 고용형태간 이동 또는 겸직, 휴직자)에게 실업급여·산재급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

- ❖ (프랑스) 근로자 및 특고, 자영업자 모두 고용보험 의무가입('19.8월~)
- ❖ (스웨덴) 모든 노동자·자영업자, “기초보험” 의무가입+“소득연동보험” 임의가입
- ❖ (영국) 모든 노동자(worker)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(고용보험 포함) 당연가입
- ❖ (이탈리아) 특고와 유사한 준종속·독립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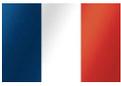
○ 또한, 적용대상 확대 시 사회보험 가입누락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, **조세당국과 사회보험기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**

\* OECD 32개국 중 24개국은 조세당국이 직접 사회보험료 징수 또는 사회보험기구를 공식 지원(조세회피 자료 제공, 체납보험료 추징 등)

**참고**

**해외 주요국의 고용보험 적용확대 사례**

❖ 프랑스·스웨덴 등은 선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,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 중(OECD, '18)

|   |  |
|---|--|
| <p>프랑스</p>     | <p>① (대상) 모든 취업자(근로자, 영세자영업자, 문화·예술 단기계약직) <b>당연적용</b><br/>         ▶ '18.9월 「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」 제정으로 적용대상을 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까지 <b>확대</b></p> <p>② (보험료) 취업자는 일반사회기여금(사회보장세) 1.7%p 인상(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&lt;임금의 2.4%&gt; 폐지),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기여분(급여의 4.05%)은 유지</p> <p>③ (실업급여) 근로자는 최대 2년간 기초일액의 57~75%, 자영업자는 최대 6개월간 월 €800 지급</p>   |
| <p>스웨덴</p>   | <p>① (대상) 기초보험(의무) + 소득연동 보험(임의)으로 구성, <b>모든 취업자 포괄</b><br/>         ▶ 실업보험기금(a-kassa)에 12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'소득연동 실업급여' 지급, 6개월 중 절반 이상 근로 시 '기초 실업급여' 지급</p> <p>② (보험료) ▲(기초보험) 모든 취업자가 사회보장세 납부, ▲(소득연동보험) 근로자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(보수의 2.64%), 자영업자는 순수익의 0.1% 납부<br/>         ▶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개인번호를 사회보장 급부의 소득정보와 연결하여 월별로 개인단위 신고 시행('19~)</p> <p>③ (실업급여) 최대 300일간 기초실업급여는 365SEK/일, 소득연동 실업급여는 실업 전 임금의 70~80%를 지급(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50일 추가 지급)</p>   |
| <p>영국</p>    | <p>① (대상) 모든 노동자(worker)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(고용보험 포함) <b>당연가입</b><br/>         ▶ 국세청(HMRC)에서 소득신고가 된 취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&lt;Class1/Class3: 노동자(employee+worker), Class2/Class4: 자영업자&gt;</p> <p>② (사회보험료)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월 소득의 12%(£892 이상 소득은 2%), 일정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13.8% 납부<br/>         ▶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전산시스템(RTI, Real Time Information)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체계 구축<br/>         ▶ 자영업자는 저소득자는 보험료·급여 정액, 고소득자는 보험료 소득비례·급여 정액</p> <p>③ (실업급여) 최장 182일간 연령·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당 £57.9~£114.85 지급</p> |
| <p>이탈리아</p>  | <p>① (대상) 근로자 및 특고와 유사한 준종속·독립노동자 고용보험 <b>당연적용</b><br/>         ▶ '15.3월 준종속·독립노동자에 대한 별도 고용보험(Dis-Coll) 도입</p> <p>② (보험료)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(임금의 1.61%), 준종속·독립노동자는 사용자 2/3(1.02%), 노동자 1/3(0.51%) 부담</p> <p>③ (실업급여) 이직 전 소득의 75%를(€1,211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25%) 근로자는 최대 78주간, 준종속·독립노동자는 최대 6개월 간 지급</p>  |

## II.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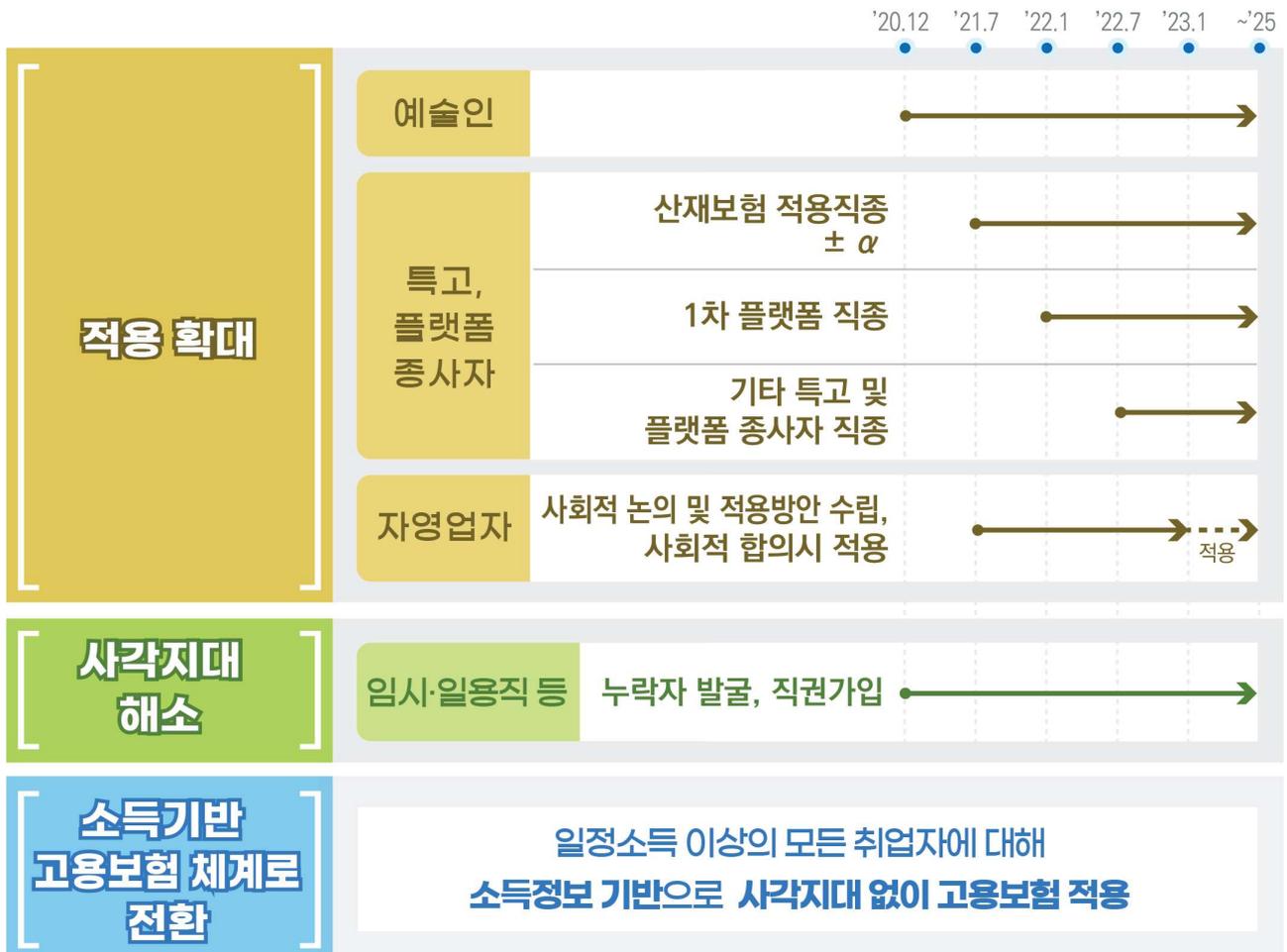
#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



제도개선  
방향

사업주 신고 기반,  
임금근로자 위주

소득에 기반하여  
모든 취업자에 단계적 적용 확대



중층적 고용안전망 마련 및 관련 인프라 구축

### Ⅲ.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

#### 1. 예술인 ('20.12.10~)

- ❖ 고용보험법·징수법 개정('20.5월)으로 '20.12.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
→ 도입 초기 적극 가입확대 및 제도 현장안착 노력

##### 1 적용 대상

- 국내 예술인(17.8만명) 중 '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'이 있는 사람은 7.5만명(42%)

##### 2 추진방안

- **(겸업자 적용 확대)** 예술인은 겸업 비중이 높으므로(43%, '18년 기준), 당사자 신청 시 같은 기간 동안의 계약서 상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
- **(공공부문 책임 강화)** 공공부문 발주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부과

##### 3 지원 방안

- **(서면계약 관행 정착)** 고용부·문체부-예술인재단 협업, 문화예술 용역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점검 실시

\*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'고용보험용 간이 서면계약양식' 개발·배포

- 인터넷·모바일로 계약서를 쉽게 작성·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·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 마련

- **(전담 지원팀 설치)** 근로복지공단 내 예술인 지원팀 및 소속기관(61개)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등 수행

\* 「예술인 집중신고기간」 운영('20.12.10~'21.3.10),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면제 등 실시

## 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플랫폼 종사자 ('21.7~)

- ❖ '20.12.9. 고용보험법·징수법 개정으로 특고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
→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로 순차적 적용, 플랫폼 관리기반 구축

|    | 1단계                    | 2단계                 | 3단계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| ·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고(14개) 중심 | · 플랫폼 기반마련, 대표직종 적용 | ·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 |
| 시기 | '21.7월~                | '22.1월~             | '22.7월~              |

### 1 (1단계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('21.7~)

#### 적용대상

- (규모) 특고 전체규모는 166만('18, 노동연), 이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(14개)은 106만~133만(노동연<'18>·근복공단<'20>)으로 추정
- (직종)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검토

#### ※ 산재보험 적용순서별 직종

- ▶ ('08.7월) 보험설계사, 골프장캐디, 학습지교사, 레미콘기사
- ▶ ('12.5월)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▶ ('16.7월) 대출·카드모집인, 대리운전기사
- ▶ ('19.1월) 전체 건설기계조종사(레미콘 기사만 적용 → 전체로 확대)
- ▶ ('20.7월) 방판원, 대여제품점검원, 방문교사, 가전제품설치기사, 화물차주

- (특성) 근로자보다 소득 및 업무시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, 직종에 따라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및 소득신고 방식에 차이

#### ※ 특고 소득신고 유형 분류

- ▶ (원천징수형) 인적용역 제공자로서,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유형  
↳ 보험설계사, 대출·카드모집인, 방판원, 학습지·방문교사, 대여제품점검원(7종)
- ▶ (사업자등록형) 사업주의 원천징수 없이, 본인이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유형  
↳ 건설기계종사자, 화물차주, 택배기사, 가전제품설치기사(4종)
- ▶ (종합소득신고자)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
↳ 퀵서비스 기사, 대리운전기사, 골프장캐디(3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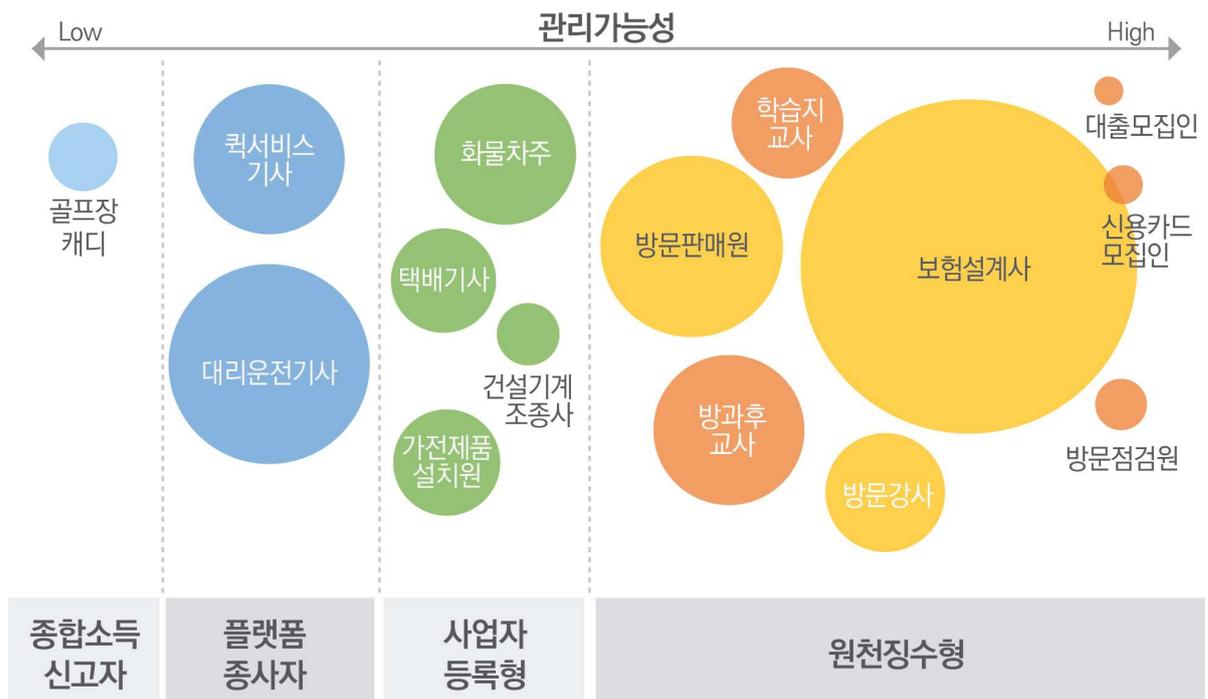
## 추진방안

❖ '2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적용하되, 우선순위는 "보호필요성·관리가능성·사회적 영향력"에 따라 결정

○ (대상)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우선 적용

- ▶ (보호필요성) 노동시장 취약성(소득, 종속성 등), 여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여부 등
- ▶ (관리가능성) 소득파악정도, 대상자 특정 및 종사실태 확인 가능성 등
- ▶ (사회적 영향력) 특고 규모, 사업주의 상품(또는 서비스) 시장지배력 등

- [검토 예: 관리가능성] 소득정보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



○ (일정)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법·징수법 시행령\*(안) 마련, 고보위 의결(~'21.2월) → 입법예고 실시(2월) → 시행(7.1일)

- ✓ 적용직종 및 적용시기를 시행령에 규정 및 시행지침 마련('21.1~6월)
- ✓ 직종별 특성에 따른 고용보험 업무지침 마련(~'21.6월)
- ✓ 고용부-근로복지공단 합동 「특고 고용보험 추진TF」 구성·운영('21.1월~)

## 지원방안

- ❖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·소득 변동을 신고하면,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신고내용 교차확인 →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
- ❖ 신규 적용대상자들이 신속히 실업급여를 보장받도록 조기 가입 필요 → 시행 초기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제공

### 1 국세소득정보 활용도 제고

- ① (인적용역형 특고) 특고의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지급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(반기→월)
  - 소규모 사업자(20인 미만)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
- ② (사업자등록형 특고) 특고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\*를 통해 노무제공사실 확인
  - \*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·용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점을 증명
  - 국세청이 특고 종사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, 소득추정 자료로 활용
  -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제고

### 2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

- (전산시스템 구축)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 완비(~'22.7월)
  - \*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소득자료DB 구축, 공단과 공동 활용
- (정보 활용도 제고) 세법 상 업종코드를 보험적용 대상 특고 유형에 맞게 정비
  - \* 예)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→ 학습지 방문강사/ 교육교구 방문강사/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
- (사업자 부담 경감) 영세사업자용 전산프로그램 제공, 국세청 - 사회보험기관 간 유사·중복되는 신고 및 자료제출 통합

- √ (국세청) ISP 수립('21.上~) → 신고자료 주기단축·오류검증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('21.下~) → 개편 시스템 운영('22.7월~)
- √ (근로복지공단) "국세소득정보 - 고용보험 정보"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('21.上~) → 운영('22.7월~)

### 3 효율적 행정인프라 구축

- (피보험자격 확인절차 마련) 고용형태별로 적용요건 등이 다르므로 가입자격 확인절차 마련, 사업주·특고 대상 자체판단 매뉴얼 보급

#### 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

- (목적) 고용보험 가입 관련 당사자 간 분쟁예방 및 갈등조정
- (방법) 당연가입 대상으로 추정되어 보험료가 고지되었으나,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→ 공단은 증빙서류 등으로 이의제기사항 판단
- (해외사례) ▲(영국) 피보험자격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세·관세청의 고객센터시스템에 문의하고 고객센터시스템은 서면의견서 제시(법적 구속력 無)  
▲(독일) 외관자영업자 등의 증가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연방연금보험공단에 지위확인소 설치, 사업주 신청에 따라 조사 후 결정(법적 구속력 有), 이의제기 가능

- (가입통지 활성화) '고용보험 모바일 앱' 개발, 가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기여요건 충족여부, 보험료 지원신청 등 안내·통지

### 4 가입유인 제고

- (보험료 부담완화) 저소득층 특고·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, 두루누리 사업에 예산 반영

\* 두루누리 사업 지원계획('21) : 예술인 3.5만명(97억원), 특고 43만명(594억원)

- (훈련프로그램 개발) 산재발생률이 높은 직종에 대한 안전교육, 노동수요 감소직종 대상 전직훈련 등 타겟별 훈련프로그램 개발

-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특고·프리랜서 종사자 훈련참여를 지원

\* 배달·택배직종 특화훈련 신설('21년)을 위해 현장수요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중  
↳ 「특고 및 자영자 특화훈련 체제마련방안」 연구용역 중('20.9.10.~, 산기대)

- (취업전담반) 광역 권역별(7개)로 고용센터에 특고 등 취업전담반 설치→취업상담, 경력설계, 취업특강, 구인·구직지원 등 집중 지원

## 적용대상

-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\*하면서, 플랫폼 종사자는 지속 증가 중\*\*

\* 국내 O2O(Online-to-Offline) 플랫폼 시장은 '19년 매출액 3조원 '18년 대비 30% 성장('19, 과기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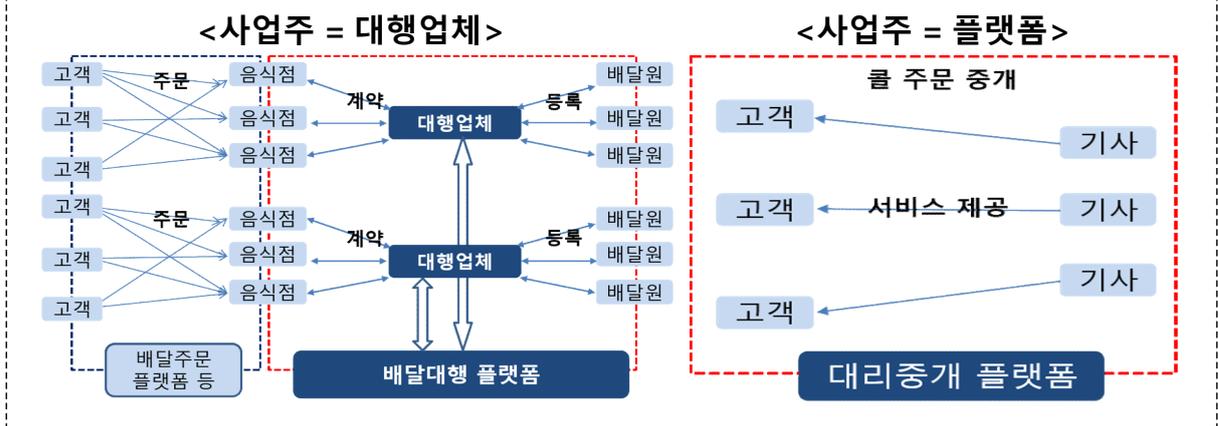
\*\*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약 22만명(협의)~179만명(광의)로 추산 < ▲(광의)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, ▲(협의)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('20, 노동연)>

- 플랫폼 종사자에는 다양한 직종·고용형태 존재, 특히 운영형태 (3면 관계 vs 소속회사가 있는 4면 관계)에 따라 거래 참여자 차이

※ (예) 4면 관계 플랫폼: 노무제공에 “고객-대행업체-플랫폼-특고” 참여

- (사업주:대행업체) 종사자는 플랫폼으로 대행업체들에서 일감 수주 (생각대로 등)

- (사업주:플랫폼)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도 담당 (배민라이더스, 카카오T 등)



- (대상)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직종 우선 적용

\* 대행업체가 있거나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까지 하는 호출형 플랫폼(퀵·대리 등)

## 추진방안

- (적용방식) 종사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거래건별 가입, 플랫폼은 거래건별로 보험료 원천징수·납부 및 거래내역 신고

\* 플랫폼은 모든 디지털 거래정보를 보유, 기존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공식경제로 이동시키는 효과(OECD, 18) → 보험행정에 적극 활용 필요

√ 플랫폼 활용 직종 중 적용대상 확정, 시행령에 규정 및 시행규칙 마련(~'21.12월)

## 지원방안

❖ **노무중개·제공 플랫폼 실태파악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, 해당 플랫폼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 의무를 부여(’22.1월 ~)**

① **(플랫폼 실태파악)** 노무중개·제공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및 신고의무 부과, 기본적인 준수사항\* 규정(’21.上. 직업안정법 개정)

\* ▲이용약관을 접근 가능한 방식(App, 홈페이지 게시)과 형태로 제공 ▲노무내용, 노무대가 및 산정기준의 사전통지 ▲노무제공자에게 활동 소득시간에 관한 자료 제공 등

○ 또한, 「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(가칭)」 마련\*, 정기적 실태조사, 표준계약서 보급\*\*, 사회보험료 지원 등 추진

\* 법률 제정안은 노·사 협의를 거쳐 ’21년 1/4분기 중 국회 제출 추진

\*\* 현재 배달·대리·퀵 등을 포함한 16개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→ 신규 직종 제정 지속 추진

② **(보험신고 의무)**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·납부 의무 부담\*

\* 고용보험법 제77조의7,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(’20.12.9. 개정, ’22.1.1. 시행)

○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에게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·정보제공 의무 신설

③ **(거래정보 협조)**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노무중개·제공 플랫폼 사업주 추가 및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(년→분기)

④ **(인센티브 제공)** 보험사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 플랫폼에 대해 인력채용 및 보험사무 민원응대 등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

✓ **직업안정법 개정(’21.上), 노무중개·제공 플랫폼의 기본적·공통적 준수사항 규정**  
✓ **소득세법·소득세법 시행령 개정(’21.上),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수집확대**  
✓ **플랫폼경제 특성에 맞는 플랫폼사 보험사무 수행 지원사업 신설**

## 주요국 동향

- ◆ 플랫폼이 노무중개·제공 수익 일부를 향유 시, 과세·신고의무 부과 논의 활발
  - ▶ (신고) 결제시스템 제공/거래정보 보유 플랫폼의 신고 의무화 제안(OECD, ’18)
  - ▶ (원천징수)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원천징수 시스템(PAYE) 도입 제안(Office of Tax Simplification 영국, ’18)
  - ▶ (종사자 보호) 프랑스는 “플랫폼 노동자 보호법” 입법(’16), 사회보장법적 권리 등 인정

## 참고 플랫폼 유형 및 특성

1 (유형)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며, 유형별로 실태 및 정책수요 등이 상이(ILO, '18.)

- 유형별로 분야(디자인·번역 등vs배달, 가사 등), 전업 여부(부업vs전업), 운영형태(3면 관계vs소속회사(agency)가 있는 4면 관계) 상이

### [플랫폼 일자리의 유형]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웹기반(web-based)  | 지역기반(local-based)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   |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 |
|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디자인, 마케팅, 번역, IT 개발 등 전문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달, 가사 등   |
| 전업or부업                       | 주로 부업   | 전업, 부업 혼재  |
| 운영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정책 수요<br>(20. 한국노동<br>사회연구소) |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,<br>불공정거래 방지,<br>세무·상담 지원,<br>경력인정시스템 구축 順 | 불공정거래 방지,<br>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,<br>4대보험 적용,<br>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順 |

2 (규모) 지역기반형(77%)이 웹기반형(23%)의 3배 이상, 배달기사가 가장 많음(52%) \* 외국은 웹기반형이 다수, 배달은 소수

- 유형별로 직종도 상이하어 웹기반은 단순작업, 창작, IT 순이나 지역기반은 배달, 기타, 전문서비스 순

3 (업무수행) 전반적으로 본인이 업무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만, 가격결정권의 유무, 성과평가 여부 등은 상이

- (웹기반형) 가격결정을 주로 본인이 하는 등 자율성이 높고(66%), 성과평가를 통해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높음
- (지역기반형) 가격결정 주체가 플랫폼·본인·소속회사 등 다양, 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다수(56%)로 자율성 정도는 모두 다름

## 적용대상

- 1~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(지역기반 플랫폼 중심) 및 기타 특고 직종

<플랫폼 활용 종사자 직종 (협의의 종사자 기준, 단위: %)>

| 웹기반(web-based) |       | 지역기반(local-based) |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단순작업           | 34.1  | 배달                | 67.8  |
| 창작             | 26.2  | 기타                | 13.0  |
| IT             | 19.8  | 전문서비스             | 11.8  |
| 전문서비스          | 15.1  | 가사                | 5.0   |
| 기타             | 5.0   | 주문제작              | 2.4   |
| 소계             | 100.0 | 소계                | 100.0 |

## 추진방안

❖ 추가 적용할 수 있는 특고 및 플랫폼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, 노·사단체 의견수렴, 소득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적용대상 결정

- (기타 특고 직종) 실태조사와 정부 지원제도 수혜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직종 현황 파악, 적용대상 선정

- 사업주 특정이 용이하고, 종사자 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,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직종 선별

■ 그간 특고 실태조사 자료에서 확인된 기타 직종 (예시)

- ▶ (운송·운수서비스) 영업용 구난차 기사, 학원차 기사
- ▶ (판매) 의류판매 중간관리자, 상조회사 영업사원
- ▶ (전문서비스) 헤어디자이너, 스포츠강사, 행사도우미, 관광가이드
- ▶ (IT 분야 등) SW개발자, 그래픽디자이너 등

- (플랫폼) 플랫폼 중 사업주 특정은 어려우나, 플랫폼이 노무중개·제공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한 유형\*에 대해 적용 확대

\* "위계형 플랫폼": 알고리즘을 이용,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 수행에 대해 지시

↳ 예) 가사서비스 플랫폼: 가사도우미 종사자에게 연락 및 일감 배분, 평점으로 관리

✓ 추가직종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('21년) → 추가 적용직종 결정, 고보위 의결 및 시행령·시행지침 개정('22.上) → 시행('22.7월~)

### 3. 자영업자 (~ '25)

- ❖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방식은 가입률을 낮추고 역선택의 문제 발생 →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수립

#### 적용대상

-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
  - (1인 자영업자) “프리랜서, 전문직, 소상공인, 농림어업 경영주” 등 약 231~258만명
  - (고용원 있는 자영업자) 특고·프리랜서 중 업무보조자를 채용한 경우 및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등 포함, 규모는 133만명

#### 추진방안

- ① **(추진방식)**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,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,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

#### <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(사회보험) 운영사례>

- **Type 1) 임의가입 + 실업부조** : 덴마크, 캐나다
  - ▶ (덴마크) 직역 단위로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임의가입, 소득비례 보험료·급여
  - ▶ (캐나다) 임의가입, 소득세 부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 납부·기여 비례 급여
- **Type 2) 기초보험(의무) + 소득연동 보험(임의)** : 스웨덴, 핀란드
  - ▶ (스웨덴) <기초> 당연적용, 소득 비례 사회보장세 징수, 정액급여  
<소득연동> 임의가입, 소득 비례 고용보험료 납부, 기여 비례 급여
- **Type 3) 자영업자(프리랜서 등) 일부 당연가입** : 독일, 오스트리아, 포르투갈
  - ▶ (독일) 공적가치 창출 직군(예술가·기자 등) 당연가입, 정부가 사업주 보험료 지원
  - ▶ (오스트리아) 월 €460 이상 프리랜서 의무가입, 연금가입 자영업자 임의가입
  - ▶ (포르투갈) 자영업자 중 독립계약자는 당연가입, 고객과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세 납부
- **Type 4) 당연가입, 정액 또는 소득비례급여** : 영국, 프랑스, 아일랜드
  - ▶ (영국) 저소득 자영업자는 정액 보험료·급여, 고소득은 소득비례 보험료·정액급여
  - ▶ (프랑스) 근로자·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만 납부(고용보험료 없음), 정액급여
  - ▶ (아일랜드) 모든 취업자는 당연가입·기여비례급여, 근로자·자영업자 보험료율 동일

② **(추진체계)**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,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\*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

\* 정부, 플랫폼社 및 프리랜서·플랫폼 종사자·소상공인 대표, 고용보험·세제 전문가 등

③ **(추진절차)** 자영업자 소득 및 정책 수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·간담회 등 실시 및 합의 도출

√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('21.上) → 가입방식 논의('21.下~) → 단계별 계획 수립('22.下)  
√ 실무지원조직으로 「자영업자 고용보험 TF」 구성(고용·중기부 등)

## 지원방안

- **(현행 제도 재설계)**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, 보험료·기여기간·구직급여 등에 대해 임금근로자와 격차를 완화하도록 설계

### <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 고려사항(IAB, '20)>

※ IAB: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·직업조사연구소

① **보험료 산정** : 소득연동\* / 정액제

\* 당연가입은 소득연동이 필수적(기준보수 등 정액보험료 방식은 역선택 우려)

\*\* 저소득층·창업초기 자영업자 등 특정 대상은 정부가 보험료 지원

② **수급자격** : 최소 납입 보험료 기준 설정, 폐업 요건\*의 재설정

\* 비자발적 요건 완화, 폐업 상황을 고려(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등)

③ **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** : 일정한 제한 요건 하에 부분실업급여 방식으로 허용 가능

④ **도덕적 해이 방지** : 고의적 반복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(경험요율제 등)

- **(정부지원제도 연계)** 가입자에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우대지원\*, '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\*\*' 확대 검토

\* 유사사례)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 시,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등

\*\*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중기부가 30~50%, 지자체가 30~70% 지원

- 고용보험과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연계방안 마련

- **(행정편의성 제고)** 실업급여 수급 시 증빙자료(매출감소 증빙 등)를 가급적 국세청 제출자료로 간소화

## 4.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('21~)

❖ 법적으로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여 직권가입

|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 확대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대상 | · 실질적 사각지대 374만명('19.말) | · 가입 누락 발굴 및 적용 |
| 시기 | '20년                    | '21 ~ '22년      |

**1 적용확대 대상** \* '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, '18 노동연 분석

- 임금근로자 중 374만명이 미가입 상태, 산업별로는 도소매·음식숙박업(54%)·건설업(42%) 가입률이 낮음

### 2 추진방안

- **(현황)** 임시·일용직은 입·이직이 잦아 소득과약 시차가 긴 소득정산 자료는 가입누락자 확인에 한계
- **(개선방안)**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\* (분기→월)하고, 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
  - \* ① 지급명세서 제출시 고용부 월별 제출서류(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) 면제
  - ② 소규모 사업자(20인 미만)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
-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하고, 고용보험 직권가입

|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                    |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b>현재</b>            | 국세청 : 분기마다 소득자료 제출<br>공단 : 매월 근로내역 신고 | 자료검증 후 공유<br>(최대 5개월) | 소득정보 시차로<br>활용률 저조  |
| <b>개선<br/>(~22년)</b> | 매월 소득자료 제출<br>(국세청-공단 신고 통합)          | 시차 없이<br>즉시 공유        | 누락자 확인 및<br>직권가입 확대 |

### 3 지원방안

- **(가입대상자 발굴)** 도소매·음식숙박업에서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지도,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대상자 확인
- **(인센티브)** 누락 근로자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면제 검토
- **(전담팀 설치)** 근로복지공단 전담팀이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지원

## 5. 적용제외 영역 최소화

❖ “**업종·직역연금 가입여부·연령\***”에 따라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해 **고용보험 적용 여부 검토**

\* ▲(업종)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, ▲(직역연금) 사립학교 교직원 / 군인 / 공무원, ▲(연령)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

### ①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

○ (적용기반 마련) 사업자등록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\* 하여 실태 파악 및 서면 근로계약 관행 정립(~'22년)

\* 농·림·어업은 대부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상황

○ (특성 반영 설계) 계절적 요소·자연재해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\* 마련(고용보험 내 별도 사업운영 등) (~'22년)

\* 예) 캐나다 Fishery benefit: 계절적 실업을 고려, 10~6월(or 4~12월) 중에만 실업급여 지급

### ② 직역연금 가입자

○ (기본방향)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역연금 가입자\*에 대해,

①실직 위험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있는지,

②자체적으로 직역연금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한지,

③집단 전체에 대해 당연적용이 가능한지(사회연대 원칙) 판단

\* 장기복무 미확정 군인, 대학병원 종사자 등 사립학교 교직원, 별정직·임기제 공무원 등

○ (추진계획)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·관계부처 의견수렴('21)을 바탕으로 적용여부 및 적용방식 검토

### ③ 65세 이상 취업자

○ 정년제도 논의와 연계, 적용제외 연령 상향조정 검토('21년 연구용역)

- 고령 취업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점, 일자리가 없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, 고령자 대상 고용안전망 확대 검토

## IV.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

❖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

⇒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

|    | 임금근로자 중심<br>근로조건 기반              | 모든 취업자 포괄<br>소득 기반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| 임금근로자, 특고·플랫폼종사자<br>총 1,700만명 가입 | 모든 취업자로 적용 확대<br>총 2,100만명 가입 |
| 시기 | ~'2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~'25년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1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의의

#### ① 일정 소득 이상의 취업자는 모두 보호

-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 가능, 사각지대 없이 모두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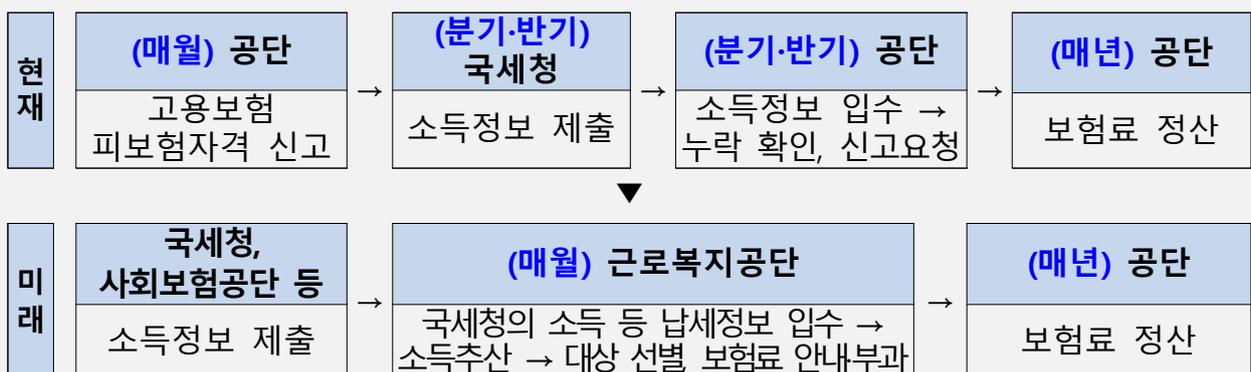
#### ② 적기에 정확한 소득정보 기반으로 운영

-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취업형태에 따른 소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활용도를 제고, 가입자 간 공평한 기여 보장

#### ③ 보험행정의 효율성 제고

- 조세 -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 및 유사·중복 제출자료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 제고

#### ※ 소득기반 고용보험 운영 체계도



❖ 가입대상 확대에 대비하고, 향후 가입자가 고용형태 간 이직·겸직 시 원활히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소득기반체계 마련

- **(적용기준 변경)** “근로시간(월 60시간 이상)”에서 “소득(노동시장에서 얻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)” 기준으로 변경
  - \* 시간기준은 노동시장에의 지속적 참여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반면, 소득기준은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
  -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복수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가능
- **(합산소득에 보험료 부과)** 여러 개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대해 합산 근로소득 기준으로 적용하여, 모든 일자리가 가입되도록 변경
  - \* '16년 임금근로자 중 중복 일자리를 보유한 근로자는 127.5만명(임금근로자의 5.7%)
  - '상용+일용', '일용+일용' 등의 형태로 일하는 저소득 취업계층 보호 가능
  - 특히 건설업은 일자리 단위로는 소득이 낮아, 그간 일용직으로 가입 시 보호수준이 낮았으나, 향후 포괄범위를 크게 확대 가능
  - \* 최저보수 적용기준을 60만원으로 설정 시, 건설·별목업에서 연 130만명 추가가입('18, 노동연)

### 해외 사례

- ❖ **(소득기준 적용)** ▲(영국) 임금이 주당 €183 이상인 경우, ▲(오스트리아) 임금이 월 €395 이상인 경우, ▲(아일랜드) 임금이 주당 €38 이상인 경우, ▲(폴란드) 임금이 월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으로 규정
- ❖ **(합산소득에 보험료 부과)** ▲(오스트리아) 프리랜서 및 저소득임금 근로자가 여러 고용주 하에서 근로 시, 월 보수가 €460.66를 초과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

- ✓ (고용부) 고용보험제도개선 TF 운영, 소득기반 운영방안 마련(22.1월~) → 고용보험위원회 의결(~'22년 말) → 법안 제출('23.上) → 시행('23년 말)
- ✓ (근로복지공단) ISP 수립('22.上~) → 전산시스템 개편('22.下~) → 운영('23~)

## 3

## 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로 전환 (24~25년)

- **(다양한 고용형태 포괄)** 자영업 적용확대 단계에 맞춰,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 적용방안 마련
    - 고용형태별 적용기준 또는 수급요건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
  - **(개인별 관리체계 도입)** 건보·연금과 유사하게 관리체계를 개인별로 변경하여, 생애에 걸친 다양한 취업형태 변화도 빠짐없이 적용
    - 개인이 상이한 형태의 일자리 간 이동하거나 겸직하는 경우, 고용보험을 연속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
- ※ **(사례)** A씨는 ①평일에는 회사에서 전일제로 근무, ②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(주 10시간), ③간헐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대리기사로 근무

  - ▶ **(AS-IS)** ① 임금근로자, ③ 특고 일자리만 고용보험 가입 가능(② 가입 불가능), ①(근로시간 기준) / ③(소득기준) 일자리 간 적용기준 차이
  - ▶ **(TO-BE)** ①·②·③ 중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, ①~③ 일자리 모두 통일된 소득적용기준으로 관리
- **(조세-사회보험 정보연계 강화)** 고용보험법령과 세법상 소득정보 파악주기를 일치시키는 등 업무프로세스 재설계
    - 조세당국 및 사회보험기관들과 협조관계 구축, 국세청-사회보험공단 통합DB 구축 및 자료연계 SW 개발 등 추진

## 해외 사례

- ❖ **(영국 RTI 시스템)**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취업자의 소득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료 일괄 징수('13년~)
  - ▶ **(고용주)** 급여 지급시마다 급여·근무시간·법정지출내역 등을 국세청(사회보험징수기관)에 제출
  - ▶ **(국세청)** 납세자별 코드 부여, 매월 소득세·보험료를 납부토록 함

- ✓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, 포괄 적용방안 논의('24.上) → 관련 법·령·규칙 개정 추진('24.下~)
- ✓ 근로복지공단 전산시스템 개편, 개인별 관리체계로 전환('25~)

## V. 추진체계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

### 1 추진 체계

- **(부처별 추진체계 연계)** 고용부·기재부·국세청 추진체계 마련,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소득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
  - \* ▲(고용부) 「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단」, ▲(기재부) 「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 추진단」, ▲(국세청) 「소득파악TF」
- **(사회적 대화)** 고용보험제도개선TF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 확정
- **(이행점검)** 뉴딜관계장관회의(위원장: 경제부총리)에서 이행상황 점검, 추진경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로드맵 수정·보완

### 2 재정건전성 관리방안

- ❖ 고용보험 적용확대과정에서 수입-지출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재정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
#### ①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

- 재정추계 결과(노동연, '20),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향후 5년간 4,499억원의 수입 예상 → 안정적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

<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재정추계>

(단위: 억원)

| 구분       | '21년  | '22년  | '23년  | '24년  | '25년  | 계 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수입 (A)   | 1,952 | 4,083 | 4,272 | 4,471 | 4,680 | 19,458 |
| 지출 (B)   | 55    | 1,937 | 3,802 | 4,309 | 4,856 | 14,959 |
| 수지차(A-B) | 1,897 | 2,146 | 470   | 162   | △176  | 4,499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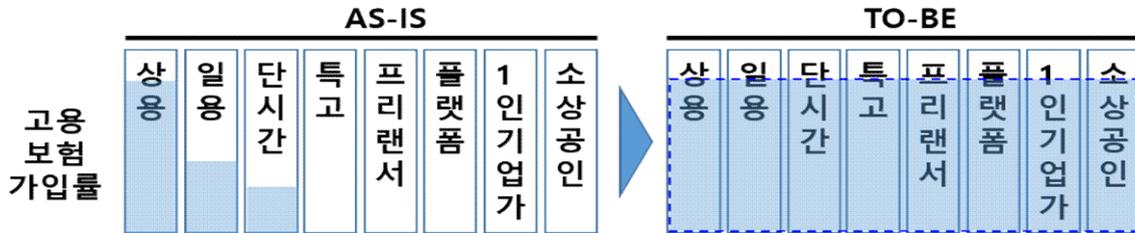
#### ②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중장기 재정관리

- 적용직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때 마다 일정기간(가입~실업급여 수급기간 고려) 운영 후 전문기관(노동연 등)을 통해 성과평가·재정추계 실시
- 평가·추계 결과에 따라 가입자격 관리 및 실업급여 운영방안 검토, 기금 수지균형을 유지하도록 정기적 모니터링 및 재정건전성 관리

## < 기대효과 >

### ① 취약계층의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보호체계 제공

- 기존 안전망 외부의 취업자 모두 포괄, 국가 전체적 보호체계 구축



⇒ 고용보험 가입자 목표: '21년 1,500만 → '22년 1,700만 → '25년 2,100만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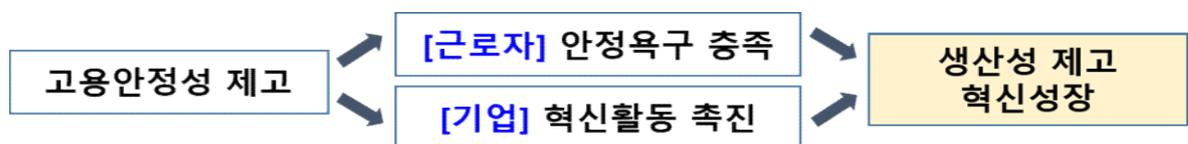
### ② 사회적 비용부담 불균형을 해소하여 노동시장 구조 왜곡 방지

- 고용형태 간 사업주의 사회보험 비용부담 격차를 해소
  - \* 고용형태별 간접 노동비용 동일 → 안전망 외부의 취업자에게 일을 전가할 동기 약화
- ⇒ 취업자는 자영업자화에 따른 소득 불안정성 등 추가적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

- ❖ (해외사례: 이탈리아) “준종속적 근로자” 사회보장확대 효과(OECD, '18)
  - ▶ (배경) '90년대 이후 “준종속적 근로자” 급증, '07년 전체 종속고용의 11% 차지
  - ▶ (정책) '07년부터 준종속적 근로자의 사회보장세(연금·실업급여 등)를 근로자와 같아질 때까지 매년 1%p씩 인상
  - ▶ (효과) '08년~'18년 중 준종속적 근로자의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

### ③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상쇄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

- 고용안전망 확대로 노동시장 내에서 다양한 상태(구직·취업·휴직 등) 및 고용형태(근로자·자영자 등) 간 원활한 이동 가능
- 개인은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가능,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이 형성되어 일자리 창출 가능성 증대



⇒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및 혁신성장 가능

## < 모성보호 확대적용 계획 >

□ **(출산전후급여)** 예술인·특고·비정규직·자영업자 등에 대해 출산 전후 모성보호 및 소득 단절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

- 고용보험 적용 확대단계에 맞춰, 예술인·특고를 출산전후 급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

### <예술인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원내용>

- (수급요건)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,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(일정 소득활동은 인정)
- (지급수준·기간)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\*, 출산전후 90일  
\* (상한액) '20년 기준 월 200만원(근로자와 동일), (하한액) 월 60만원(고시)

\*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·예술인 등과 유사하게 출산전후급여 지급 추진

-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·파견근로자에게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

-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출산전후 모성보호의 사각지대 해소

\*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적용제외자, 수급자격 미충족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

□ **(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)**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가입 특고, 예술인, 플랫폼노동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

- 사회적 협의를 거쳐 '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(특고, 예술인 등) 단계적 확대 추진

\* 육아휴직 확대에 따라,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재원 마련 방안 강구

## < 중층적 고용안전망 및 관련 고용인프라 구축 >

- **(중층 고용안전망 구축)**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상호 보완하여 실업자를 두텁게 보호
  - '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,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저소득층·청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일정소득 지원
    -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지원을 집중하여,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고·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충격 완화
  - 제도 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,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의 단계적 확대 추진
    - \* (19.3월 경사노위 합의문 2-3)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, 단계적으로 확대한다.
    - \*\* 1차년도 사업성과 평가(21.上)를 토대로 「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」 수립(21.下)
- **(고용인프라 확충)** 전국민 고용보험,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추진
  -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센터 상담인력 충원 및 센터 추가설치
  -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형고용센터 30개소 및 출장소 40개소 설치·운영(11월~)
  - 공공·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\*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역량 강화도 지속 추진
    - \* 실무중심(과정평가형)으로 직업상담사 양성, 민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(21~)

### ❖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(20.7.28.) :

- 가.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상담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, 고용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.
- 나. 정부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온·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,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.
- 다. 정부는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·민간 직업상담원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.



|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처    | 일정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<b>1. 대상별 고용보험 적용 확대</b>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<b>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</b>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예술인 고용보험 가이드라인·전자계약 플랫폼 마련        | 고용부·문체부 | 계속       |
|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~'21.上   |
| 예술인 전담 지원팀 설치·운영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0.12월~ |
| <b>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</b> |         |          |
| <b>②-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</b>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적용직종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.上    |
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파악 개선                 | 기재부     | '21.上    |
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.7월~  |
| 피보험자격 확인절차 마련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.上    |
|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.下~   |
| 취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계속       |
| <b>②-2. 플랫폼종사자</b>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노무중개·제공 플랫폼 신고의무 부과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.上    |
|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추가              | 기재부     | '21.上    |
|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 및 자료연계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.下    |
| 보험사무 수행 플랫폼 지원방안 검토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.下~   |
|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2.1월~  |
| <b>②-3.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</b>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추가 직종 노무제공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년     |
| 추가 적용직종 결정·시기 규정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2.上    |
|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고용보험 적용 시행         | 고용부     | '22.7월~  |
| <b>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</b>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과 연계           | 중기부     | '21년~    |
|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재설계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년     |
|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논의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1.下~   |
|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2년~    |
|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2.下~   |

|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처  | 일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<b>④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</b>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|
|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     | 기재부                | '21.上 |    |
| 소득신고자료 공유 강화             | 국세청·고용부            | 계속    |    |
|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발굴 확대     | 고용부                | 계속    |    |
|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 가입 활성화 방안 검토 | 고용부                | 계속    |    |
| <b>⑤ 적용제외 영역 최소화</b>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|
| 고용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   | 고용부·국방부<br>교육부·인혁처 | '21년  |    |
| 고용보험 적용 검토               | 복지부                | '22년~ |    |

## 2.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|
| <b>① 임금근로자 관리체계 마련</b>      |         |       |  |
| 소득기반 고용보험 운영방안 논의           | 고용부     | '22년  |  |
| 「고용보험법」·「보험료징수법」 개정 추진      | 고용부     | '23년~ |  |
| 국세청-근로복지공단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      | 국세청·고용부 | ~'23년 |  |
| <b>② 소득기반 개인별 관리 체계로 전환</b> |         |       |  |
|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고용보험 논의      | 고용부     | '24년~ |  |
| 고용보험 관리시스템 개발·구축            | 고용부     | 계속    |  |

## 3. 재정건전성 관리 및 모성보호 확대적용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|
| <b>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관리</b> |         |       |  |
|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재정운용 평가    | 고용부     | 계속    |  |
|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기금재정 추계    | 고용부     | 계속    |  |
|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             | 고용부·기재부 | 계속    |  |
| <b>② 모성보호 확대적용</b>       |         |       |  |
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급방안 마련 | 고용부     | '21.上 |  |
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     | 고용부     | '21.下 |  |
| 출산전후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      | 고용부     | 계속    |  |
| 육아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    | 고용부     | '22년~ |  |